

1. 개정 이유

그간 택시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로 바퀴회전수를 기반으로 택시의 주행거리, 시간 등을 산정하는 택시전기식미터기만을 규정하여 사용해왔음.

그러나, 최근 측량 및 IT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등 보편적이고 상용화된 기기를 이용하여 위성항법정보를 이용한 위치, 시간 등의 측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위성항법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택시미터 개발을 임시허가한 실증사례에 따라 위성항법정보 기반 택시미터의 구현가능성과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부가서비스 창출가능성이 확인됨.

이에 택시미터의 종류를 기존 바퀴회전수를 기반으로 하는 택시전기식미터기와 위성항법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택시앱미터로 구분하고, 택시앱미터의 검정기관, 검정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시미터의 종류 세분화(안 제94조)

택시미터기의 종류를 택시전기식미터(기존)와 택시앱미터(신규)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택시미터의 검정범위를 명확히 함

나. 택시앱미터 검정종류, 검정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95조)

택시앱미터를 신규 개발하거나 택시 요금산정기능을 변경한 때, 개발한 택시앱미터를 사용하려는 경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검정을 신

청하는 서식 및 절차 등을 규정함.

다. 택시애크터 검정기관 지정(안 제96조)

택시애크터의 전문검정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지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장치중 요금장치를 개조하여”를 “요금장치 또는 요금산정기능을 개조하거나 변경하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개조하는”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는”으로 한다.

① 법 제47조에 따른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구분한다.

1. 택시전기식미터 : 자동차에 부착되어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
2. 택시앱미터 : 위성항법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속도 등을 계산하여 택시 승차요금을 산정하는 방식

② 택시미터의 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택시전기식미터 :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변속기에 부착되어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을 말한다)에서부터 기본·주행·할증요금을 표시하는 요금장치(이하 “요금장치”라 한다)까지로 한다.
2. 택시앱미터 : 위성항법장치로 측정된 좌표를 기반으로 속도, 거리를 계산하는 기능, 요금을 계산하는 기능, 기본·주행·할증요금을 표

시하는 기능(이하 “요금산정기능”이라 한다)까지로 한다.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 제59호서식 또는 별지 제59호의2”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있다”를 “있고, 제3호 다목에 따른 사용검정은 별도의 신청없이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매3개월마다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택시미터”를 “택시전기식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94조제2항”을 “제94조제3항”으로, “요금장치를 개조하는”을 “요금장치 또는 요금산정기능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요금장치와”를 “요금장치 또는 요금산정기능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전단 및 나목 전단 중 “실시하는”을 각각 “택시전기식미터에 대하여 실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택시애플미터를 사용개시 후 실시하는 검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전단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2항에 따라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으로 한다.

-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택

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택시앰미터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의 제목 “택시미터 제작 수리 사용 검정신청서”를 “택시전기식미터 제작 수리 사용 검정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중 “택시미터”를 “택시전기식미터”로 한다.

별지 제5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앱미터 검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택시앱미터를 개발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제작검정을 신청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4조(택시미터의 구조등) ①자동차에 부착되어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의 구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②택시미터의 검정범위는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변속기에 부착되어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을 말한다)에서부터 기본·주행·할증요금을 표시하는 요금장치(이하 이 조에서 “요금장치”라 한다)까지로 한다.	제94조(택시미터의 구조등) ① 법제47조에 따른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구분한다. 1. 택시전기식미터 : 자동차에 부착되어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 2. 택시앱미터 : 위성항법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속도 등을 계산하여 택시 승차요금을 산정하는 방식 ② 택시미터의 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택시전기식미터 :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변속기에 부착되어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을 말한다)에서부터 기본·주행·할증요금을 표시하는 요금장치(이하 “요금장치”라 한다)까지로 한다. 2. 택시앱미터 : 위성항법장치로 측정된 좌표를 기반으로 속도, 거리를 계산하는 기능, 요금을

③누구든지 택시미터의 장치중
요금장치를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택시요금체계의 변
경으로 인하여 시·도지사가 정
하는 기간내에 개조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검정의 신청등) ①택시미
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
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59호
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
사용)검정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라 한다)에 제출하고 검정을 받
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사용검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59
호서식의 신청서 대신 자동차등
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다.

계산하는 기능, 기본·주행·
할증요금을 표시하는 기능(이
하 “요금산정기능”이라 한다)
까지로 한다.

③ ----- 요금장
치 또는 요금산정기능을 개조하
거나 변경하여-----
----. -----
----- 개조하거나 변경
하는 -----.

제95조(검정의 신청등) ① -----

----- 별지 제59호서
식 또는 별지 제59호의2-----

----- 제3호가목 및
나목-----

----- 있고, 제3호
다목에 따른 사용검정은 별도의

1. (생략) 2. 수리검정 : 택시미터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가. 자동차에 <u>택시미터</u>를 부착하는 행위 나. <u>제94조제2항</u>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u>요금장치를 개조하는 행위</u> 다. (생략) 라. <u>요금장치와</u>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 마. (생략) 3. 사용검정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 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정기검사시 <u>실시하는 검정</u>.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	<u>신청없이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매3개월마다 실시한다.</u> 1. (현행과 같음) 2. ----- ----- ----- ----- 가. ----- <u>택시전기식미터</u>----- 나. <u>제94조제3항</u> ----- ----- ----- <u>요금장치 또는 요금산정기능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는</u> ----- ----- 다. (현행과 같음) 라. <u>요금장치 또는 요금산정기능과</u> ----- ----- 마. (현행과 같음) 3. ----- ----- 가. ----- ----- ----- <u>택시전기식미터에 대하여 실시하는</u> ----. -----
--	---

검사 기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수리검정을 받은 경
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
른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
시 실시하는 검정. 이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
개월 이내에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② 삭 제

③·④ (생 략)

제96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등) <신 설>

-----.

나. -----

- 택시전기식미터에 대하
여 실시하는 ---. -----

-----.

다. 택시앱미터를 사용개시
후 실시하는 검정

③·④ (현행과 같음)

제96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등) ① 법 제47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미터전문검
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택시
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택시앱미터의 택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미터전문검정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는 경우에는 검정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택시 미터(제작·수리·사용)전문검 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1.·2. (생 략)	<u>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 는 자가 다음</u> ----- ----- ----- --. 1.·2. (현행과 같음)
--	---

택시전기식미터 [] 제작 [] 수리 [] 사용 검정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제작검정: 15일 수리검정: 30일 사용검정: 즉시
------	------	------	------------------------------------

신청인	상호(명칭)	자동차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검정내역	형식	수량	제작번호	전 검정일자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제작검정: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수리검정: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사용검정: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작성방법

자동차등록번호는 수리검정 또는 사용검정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자 르 는 선

택시전기식미터 검정 결과 [] 합 [] 불

구조검정	겉모양	기차검정	구 분	기본거리	이후거리
	[] 적합 [] 부적합		기 준		
	표기 및 표시		검출치		
	[] 적합 [] 부적합		판 정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검정시행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택시앱미터 [] 제작 [] 수리 [] 사용 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

신 청 인	상호(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검정내역	명 칭	개 발 사	개발번호(ver.)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귀하

첨부서류	1. (국토교통부고시 제00호) 앱미터 검정 시행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00]앱미터 검정기준에 따른 검정항목별 증빙자료	수수료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정	➔	검정결과 통보 검정확인서 발급
--------	---	----	---	----	---	---------------------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